

토지초과 이득세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임업은 투자회임기간 길고 이윤낮아 주업으로 할수만은 없어

- 타업종 겸업으로 얻은 이익 투자토록 유도해야 -

최근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관련하여 재무부 공고 제89-27호 (1989. 8. 26)로 토지초과 이득세법(안) 입법예고를 행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구체적인 과세대상토지의 범위중 임야에서의 법인의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인가림을 제외한 모든 임야”로 되어있어 임업이 주업이 아니지만 임업과 연관되어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법인, 즉 제지, 펄프, 탄광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시 임업은 구조적으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이윤이 낮아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취약점 때문에 주업이 되었든 겸업이 되었든 돈많은 기업(법인)에 의하여 투자되고 경영되기를 바라왔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산림법상에서도 임산물을 이용 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산업비리를 소유케하고 조림을 권장 실시하여 왔는데 임업이 주업이 아니라 단순한 이유때문에 이제와서 이를 법인이 소유한 기업임에 대하여 철퇴를 가한다면 참으로 앞뒤가 모순되는 정부 시책일 뿐만아니라 앞으로의 임업은 순수개인이 소유한 산림에만 의존해야하는 문제점이 되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문제되는 현행법상 “주업”的 개념이 매출액의 50% 이상돼야 한다든지, 종업원의 수가 50%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자산의 총액이 50%이상되어야 한다는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현재 산지를 보유한 제지, 펄프, 탄광등 관련기업들이 보유한 임야는 이상 세가지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지 지난 9월호에서도 이미 언급하였고 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재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을 여기에 수록한다.

- 편집자 -

1. 의견

우리협회는 귀부 공고·제89-27(89. 8. 26.)에 따른 토지초과이득 세법안에 대하여公正적으로 수용코자 하오나 다만, 임야에서의 법인의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인가림을 제외한 모든 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2. 사유

- 가. 임업은 본질적으로 회임기간이 길고 이윤이 낮음으로 해서 순수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구조적 쥐약점 때문에 임업을 주업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이 생겨날 수 없는 현실 여건이며, 현재에도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국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 나. 따라서 임업은 주업이든 겸업이든 법인의 기업됨 경영에 의존하고 있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다. 이것은 임업에 투자를 하고 전업(專業)으로 하고자 해도 앞서 지적한 채산성의 문제로 전업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업종과 겸업을 하므로서 거기에서 얻어진 이윤으로 임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것이며 또 그렇게 유도되어야 하고 이것은 세계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도 그러하고 오히려 임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손비처리를 해 주어 산림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 라. 이러한 맥락에서 타 산업과 임업을 겸할 수 있도록 산림 시책이 이끌어져야 하며, 보전임지를 어떻게 생산화 하느냐가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임지는 대지나 일반 토지와는 달라서 누가 소유하느냐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마. 또한 임업이 주업이 아니지만 펄프, 제지회사, 탄광회사, 합판, 조경회사등은 자가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산지를 보유하게 되며
- 바. 산림법 제43조에서도 임산물을 이용 또는 가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비율을 의무적으로 소유케 하고 조림을 하도록 하고 있고,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도 건설업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상수 포지(임야)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 사.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법 제21조 규정에의한 특수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문화재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등이 있으므로 개인의 경우와 같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합니다.

3. 결론

다음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 개인의 경우

재무부 공고 제89-27호 개인 소유부분 임야 찬성

나. 법인의 경우

- (1) 임업을 주업 또는 임산자원을 원료로 하는 겸업(제지, 합판, 펄프, 탄광, 조경) 하는 법인이 보유한 보전 임지중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
- (2) 특수,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3) 보안림
- (4) 채종림
- (5) 시험림
- (6) 의무조림을 시행한 임야
- (7) 산업비림
- (8) 조경공사업종의 관상수 포지